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(고영옥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영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28일

발의자 : 경수현, 고영욱, 박영섭, 소형준,
오중균, 임태근, 정병기, 정해숙

1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·시행에 따라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(제13조의2, 2023. 9. 14. 시행)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(제33조의3, 2024. 3. 26. 시행)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북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,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명 재정비(안 제1조)

나. 장애인 체육회,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정의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)

다.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의2)

라. 장애인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(안 제8조의2)

마.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9조)

바.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 ~ 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문화체육과

라. 입법예고: 2025. 4. 3. ~ 2025. 4. 8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제2항”을 “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제2항”으로, “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”를 “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구”라”를 ““구”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장애인 체육 종목별 동호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”을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4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“장애인스포츠지도사”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유형 및 정도,”를 “유형, 정도 및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장애인 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교육
2.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상담·지도
3.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
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장애인 체육 지도자”를 “장애인스포츠지도사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
2. 사무국 운영경비
3. 사무국 임차료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

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,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행사 안전관리

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·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.

제10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구청장은 성북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북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대부·사용허가)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성북구장애인체육회에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대부·사용허가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·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3조에 따라 대부·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12조의 제목“(시행규칙)”을“(대부·사용허가 기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허가 기간은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-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부·사용허가는 대부·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기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대부·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·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·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대부·사용허가의 취소)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·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- 2.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- 3.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

② 구청장은 대부·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부·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4조(중전의 제9조)제1항 중 “경비 지원을 받은 동호회, 체육회, 장애

인 체육시설”을 “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단체(성북구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15조(종전의 제10조) 중 “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」”를 “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6조(종전의 제11조) 중 “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제2항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8조 및 제29조,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의 권장·보호 및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“장애인 체육회”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란 장애인 체육 종목별 동호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제2항----- ----- ----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“구”라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4항에 따른 ----- -----</p>

단체를 말한다.

6. (생략)

7. “장애인 체육지도자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·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,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-----.

6. (현행과 같음)

7. “장애인스포츠지도사”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유형, 정도 및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장애인 체육교실 운영

등)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장애인 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

제8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
3. ~ 6. (생략)

<신설>

을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교육

2.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상담·지도

3.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
제8조(경비의 지원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장애인스포츠
츠지도사-----
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
2. 사무국 운영경비
3. 사무국 임차료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

<신 설>

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,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9조(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)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·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.

<신 설>

제10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구청장은 성북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북구장애인체육회

<신 설>

제9조(보고·검사) ① 구청장은 경비 지원을 받은 동호회, 체육회, 장애인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

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대부·사용허가)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성북구 장애인체육회에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대부·사용허가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·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3조에 따라 대부·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14조(보고·검사) ① -----
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단체(성북구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) -----

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
장부·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
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0조(포상) ① 구청장은 장애인
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
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
상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
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
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
사항 외의 지원 사업 등에 관련
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
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
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
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를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<신설>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포상) -----

----- 사항
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
조례」-----.

제16조(준용) -----

----- 「지방
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
법률」 및 -----
-----.

제12조(대부·사용허가 기간) ①
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
의 대부·사용허가 기간은 대부
·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
이내로 한다.

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부·
사용허가는 대부·사용허가 기
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기간
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라 대부·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·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·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3조(대부·사용허가의 취소)

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·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
2.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
3. 대부·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

② 구청장은 대부·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부·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